

● **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 - 367호**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 인가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6년 12월 20일

금융위원회위원장

- 다 음 -

1. 대상 회사

(1) 합병회사

- 상 호 : 현대증권(주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1 현대증권빌딩

(2) 피합병회사

- 상 호 : 케이비투자증권(주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1~22층

2. 인가 내용

- 합병방법 : 현대증권(주)이 케이비투자증권(주)을 흡수합병
-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: 현대증권(주)
- 합병비율 : [1(현대증권(주)) : 1.3368131(케이비투자증권(주))]

3. 승인 조건 : 합병 완료시 지체없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합병 완료 사실을 보고할 것

4. 인가일: 2016. 12. 14.